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656

발의연월일: 2025. 3. 5.

발 의 자: 박성훈·김성원·이헌승

이인선 • 고동진 • 최은석

조배숙 • 한지아 • 박충권

김기웅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행위자의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두되, 행위자의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업무관련성을 규정하지 않은 '상당한' 주의·감독의무를 선의의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부여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벌규정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주의·감독의무 등 관리 책임을 성실히 이행한 법인과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법률 제 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단서 중 "상당한"을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제25조(양벌규정)		
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			
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			
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u>상당</u>	해당 업		
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무에 관하여 상당한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